제7회 규제합리화위원회
성장분과위원회 회의록

2026. 7. 3.

국 무 조 정 실
규 제 조 정 실

Ⅰ. 회의개요

○ 일　　시 : ’26. 7. 3. (금) 14:00 ~ 18:00

○ 출석위원(11명)

- 남궁범 분과위원장(주재)

- 민간위원 : 강영철, 김춘순, 류정모, 박민수, 박익수, 이세영, 이종원, 조원동, 최원석 위원

- 정부위원 : 국조실

Ⅱ. 상정안건

구분	의안번호	상정기관	의 안 명	구 분
①	2026-172	공정위	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	심의안건

Ⅲ. 회의 결과

1. (심의)「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개정안

(2026-172호, 공정위)

□ 개 요

소관 부처	공정거래위원회
규제사무명	1 정보공개서 기재 사항 2 정보공개서 변경 기한
규제내용	1 정보공개서 기재 사항 ○ 제휴계약 내역(제휴사와 가맹본부간 비용 분담률 포함), 필수품목 구입대금, 평균 영업위약금 등 정보공개서 의무 기재 사항 추가 2 정보공개서 변경 기한 ○ 가맹점·직영점 수, 제휴계약 내역, 광고·판촉활동 등 기재항목의 변경등록 주기를 '분기별'로 설정
위원회 결정 내용	1 정보공개서 기재 사항 ○ 기재항목으로 추가된 제휴계약 내역 중 "제휴사와 가맹본부간 비용 분담률" 정보는 가맹본부의 영업비밀과 연관될 수 있고, - 동법상 정보공개 대상이 아닌 제휴사의 계약 관련 정보까지 공개될 우려가 있는바, 기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개선권고 ○ 아울러, 필수품목 구입대금(총액)의 경우 정확한 금액이 아닌 일정한 범위(금액 상·하한)로 기재할 수 있음을 동 개정안에 명시할 것을 개선권고

위원회 결정 내용	○ 그밖의 의무 기재 추가 항목은 가맹본부·점주간 정보비대칭 완화 및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로 판단되며, - 규제 준수를 위한 피규제자의 추가적인 부담도 과도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운바, 원안동의 ○ 다만,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유출 우려를 감안하여, 다음 사항은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에서 비식별 처리할 것을 부대권고 - 제휴업체의 종류·명칭 및 세부거래 조건(제휴사·가맹본부간 비용 분담률 정보 제외) 등 제휴계약 내역 - 가맹사업자가 본부에 지급하여야 하는 필수품목 구입대금 ○ 또한, 가맹점주의 해석상 오인 방지를 위해, “계약 중도 해지 시 평균 영업위약금” 정보 관련 주의 문구를 명시할 것을 개선권고 2 정보공개서 변경 기한 ○ 가맹점·직영점 수 관련 정보는 가맹본부가 상시 보유·관리하는 사항으로, 가맹점주의 가맹사업 운영상 안정성과 직결되는 정보인바, 분기별 기재의 필요성·적정성이 인정되어 원안동의 ○ 다만, 가맹본부의 행정 부담 등을 고려하여, 다음 사항에 대한 변경등록 주기를 완화하여 규정할 것을 개선권고 - 계약 중도 해지시 평균 영업위약금 현황의 변경 등록 주기를 분기별 → 1년 주기로 완화하여 규정

	- 제휴계약 내역 및 광고·판촉활동 관련 정보의 변경등록 주기를 분기별 → 변경사유 발생 분기로 수정하여 규정 ○ 또한, 개정안 시행('28.1.1) 前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공개 방법 안내·교육 등 행정적 지원방안을 검토·실시할 것을 부대권고 3 재검토기한 ○ 정보공개서 기재 항목 및 변경등록 주기의 타당성 등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위해, 재검토기한 3년을 설정할 것을 개선권고

□ 논의 내용

(1) 이해관계자① 의견 청취

○ (이해관계자) 예비 창업자 보호를 위해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의 확대가 필요하며, 해외 국가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정보를 공개

○ (OOO 위원) 제휴사와 가맹본부간 비용분담률 등 제휴계약 내역이 공개될 경우 제휴사업 전체가 위축될 우려도 있어 보이는데?

→ (이해관계자) 가맹점주의 매출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 있으나, 제휴행사 진행 시 추가 인력 고용 등 점주의 비용 부담도 수반

○ (OOO 위원) 가맹점주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제휴행사 비용 분담률 관련 정보가 아닌지?

→ (이해관계자) 가맹본부가 제휴사와 불합리한 계약을 맺은 뒤 점주에게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우려되므로 투명한 공개 필요

○ (OOO 위원) 제휴행사 진행 시 점주의 동의 절차는 필요 없는지?

→ (이해관계자) 현행법상 광고·판촉행사 실시 전 일정 비율 이상의 점주 동의가 필요하나, 점주 입장에서는 타 가맹점에서 행사를 실시하는데 본인만 이를 거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

○ (OOO 위원) 제휴행사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포함한 브랜드 전체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도 있을텐데?

→ (이해관계자) 제휴사에서 가맹본부별 경쟁을 심화시켜 유리한 계약을 맺고, 그 비용은 점주에게 전가되고 있음

○ (OOO 위원) 마지막으로 정보공개서 제도 관련 건의사항?

→ (이해관계자) 최대한 많은 정보가 자주 점주들에게 공개되어야, 과거 "떴다방"식 프랜차이즈 운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

(2) 이해관계자② 의견 청취

○ (이해관계자) 제휴사와 가맹본부간 제휴계약 세부 거래조건은 양자의 영업비밀이며, 필수품목 구입대금은 기존 차액가맹금 등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서 제외 요청

○ (OOO 위원) 개정안은 가맹계약 중도 해지 시 평균 영업위약금 정보를 분기별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, 이에 대한 의견은?

→ (이해관계자) 상기 정보를 조사·공개토록 하는 것에 큰 이견은 없으나, 분기별 공개는 본부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음

○ (OOO 위원) 가맹점주 측에서는 제휴계약이 영업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?

→ (이해관계자) 가맹점주의 우려를 감안하여, 가맹본부와 점주간 비용 분담률 정보는 공개할 수 있으나, 제휴사와 본부간 분담률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함

○ (OOO 위원) 제휴계약 진행 전 점주에게 어떠한 정보를 공개하는지?

→ (이해관계자) 점주의 사전동의를 받기 위해 제휴행사 내용과 점주의 비용 분담률 정보를 사전 안내하고 있음

○ (OOO 위원) 필수품목 구입대금 정보 공개 관련 의견은?

→ (이해관계자) 기존에도 차액가맹금과 구입강제품목 공급가격 상·하한 등을 공개하고 있음. 필수품목 구입대금 관련 정보 공개 시 매입 원가율이 역산될 것이 우려됨

→ (이해관계자) 과거 모바일 상품권 관련 업체별 수수료율 정보가 유출되어 논란이 된 바 있으며, 가맹본부별 필수품목 구입대금 정보 유출 시 제휴계약 조건이 음지화될 우려가 있음

(3) 부처 의견 청취

○ (공정위) 개정안은 창업 의사결정에 중요한 사항을 공개하고, 보다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여 본부·점주간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기 위함임

○ (OOO 위원) 가맹희망자용 정보공개서와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의 차이는? 정보공개서 제도에서 공정위의 역할은 무엇인지?

→ (공정위) 가맹희망자용 정보공개서는 모든 정보공개 항목이 기재되며,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는 일부 항목을 비식별처리하여 공개

→ (공정위)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모든 항목이 기재된 정보공개서 원본을 가맹본부로부터 등록받아 관리

○ (OOO 위원) 가맹희망자에게만 제공되는 정보공개서의 내용 중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관련 사항이 대외적으로 유출될 우려는 없는지?

→ (공정위)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의 창업 의사 진정성을 자체적으로 검증·확인하여,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절차를 운영 중

→ (공정위) 만약 경쟁사가 가맹희망자를 위장하여 타 가맹본부의 정보를 취득·유출할 경우, 민·형사상 제재 대상이 됨

○ (OOO 위원) 제휴계약 내역 중 제휴사와 가맹본부간 비용 분담률 정보가 본부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일견 타당해보이는데?

→ (공정위) 관련 내용을 비식별처리하여 공개하는 방안 검토 중

○ (OOO 위원) 공정위가 추진 중인 정보공시 제도에 대한 설명 요청

→ (공정위) 현재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공정위가 심사한 뒤 공개하고 있으나, 정보공시 제도는 본부가 자체적으로 정보공개서를 작성·공개하고, 공정위는 이를 사후 관리하는 방식임

○ (OOO 위원) 그간의 정보공개서 정책에 대한 성과 및 평가?

→ (공정위) 점진적으로 정보공개 대상 항목을 보완해왔으며,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불공정한 정보 비대칭을 완화해왔다고 평가

→ (공정위) 실제로 매년 진행하고 있는 점주 대상 실태조사 결과, 불공정 관행 등 관련 수치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추세

○ (OOO 위원) 정보공개 제도 외에도, 가맹점주 측이 요청하는 제휴행사 관련 사전 동의제의 제도적 사각지대 보완방안 검토 요청

→ (공정위) 관련 절차상 미비점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음

(4) 위원회 논의

○ (OOO 위원) 제휴계약 내역 중 “제휴사와 가맹본부간 비용 분담률” 정보는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 될 수 있고, 대외 유출 가능성과 그에 따른 부작용 발생 우려도 배제하기 어려움

○ (OOO 위원) 필수품목 구입대금의 경우, 금액 상·하한으로 기재토록 하여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유출 우려를 최소화할 필요

○ (OOO 위원) 가맹본부의 우려를 감안하여, 제휴계약 내역과 필수품목 구입대금은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에서 비식별처리할 필요

○ (OOO 위원) 가맹점주의 오인 방지를 위해, 계약 중도 해지시 평균 영업위약금 관련 주의 문구와, 위약금 최소·최대금액을 병기할 필요

○ (OOO 위원) 계약 중도 해지시 평균 영업위약금 관련 최소·최대금액까지 병기하는 것은 가맹본부에게 다소 과도한 조치일 수 있음

○ (OOO 위원) 가맹점·직영점 수 정보는 이해관계자 반대가 크지 않고, 가맹점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될 필요성이 큰 사항으로 보임

○ (OOO 위원) 계약 중도 해지시 평균 영업위약금 현황은 기존의 타 정보공개 항목과 같이, 1년 주기로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임

○ (OOO 위원) 별도로 변경사항이 없는 가맹본부까지 제휴계약 내역, 광고·판촉활동 정보를 매 분기 작성토록 하는 것은 다소 과도

○ (OOO 위원) 재검토기한 설정과 공정위의 자체적 교육 시행 등을 통해 제도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필요

□ 심의 결과

1 정보공개서 기재 사항

○ 기재항목으로 추가된 제휴계약 내역 중 “제휴사와 가맹본부간 비용 분담률” 정보는 가맹본부의 영업비밀과 연관될 수 있고,

- 동법상 정보공개 대상이 아닌 제휴사의 계약 관련 정보까지 공개될 우려가 있는바, 기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개선권고

○ 아울러, 필수품목 구입대금(총액)의 경우 정확한 금액이 아닌 일정한 범위(금액 상·하한)로 기재할 수 있음을 동 개정안에 명시할 것을 개선권고

○ 그밖의 의무 기재 추가 항목은 가맹본부·점주간 정보비대칭 완화 및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로 판단되며,

- 규제 준수를 위한 피규제자의 추가적인 부담도 과도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운바, 원안동의

○ 다만,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유출 우려를 감안하여, 다음 사항은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에서 비식별처리할 것을 부대권고

- 제휴업체의 종류·명칭 및 세부거래 조건(*제휴사·가맹본부간 비용 분담률 정보 제외*) 등 제휴계약 내역

- 가맹사업자가 본부에 지급하여야 하는 필수품목 구입대금

○ 또한, 가맹점주의 해석상 오인 방지를 위해, “계약 중도 해지 시 평균 영업위약금” 정보 관련 주의 문구를 명시할 것을 개선권고

2 정보공개서 변경 기한

○ 가맹점·직영점 수 관련 정보는 가맹본부가 상시 보유·관리하는 사항으로, 가맹점주의 가맹사업 운영상 안정성과 직결되는 정보인바, 분기별 기재의 필요성·적정성이 인정되어 원안동의

○ 다만, 가맹본부의 행정 부담 등을 고려하여, 다음 사항에 대한 변경등록 주기를 완화하여 규정할 것을 개선권고

- 계약 중도 해지시 평균 영업위약금 현황의 변경등록 주기를 분기별 → 1년 주기로 완화하여 규정

- 제휴계약 내역 및 광고·판촉활동 관련 정보의 변경등록 주기를 분기별 → 변경사유 발생 분기로 수정하여 규정

○ 또한, 개정안 시행('28.1.1) 前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공개 방법 안내·교육 등 행정적 지원방안을 검토·실시할 것을 부대권고

3 재검토기한

○ 정보공개서 기재 항목 및 변경등록 주기의 타당성 등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위해, 재검토기한 3년을 설정할 것을 개선권고